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김천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4. 1.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8건	9	9	2	65,012	6	620,888	0	0
1	과	임기제공무원(---, -급상당) 채용 부적정		1						
2	과	---- -급 결원보충 부적정		1						
3	과	-급 승진요인 책정 부적정		1						
4	과	임기제공무원(----급) 근무기간연장 및 정원관리 부적정		1						
5	과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1						
6	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1						
7	과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1						
8	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1						
9	과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1							
10	과	석유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적정	1							
11	과	-----(-)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1						
12	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28,012	1	25,881		
13	과	--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1	23,100		
14	과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1	390,137		
15	과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93,860		
16	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35,800		
17	과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1	37,000	1	52,110		
18	과	공장설립제한지역 관련 공장 건축허가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급상당)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에서는 스포츠 중심도시로의 위상에 맞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1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시행 후 2021. 7. 1. ----(-급 상당)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다.

1. 채용공고문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1~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 2. 26.)」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임용령에 근거하여 일반임기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일반임기제(-급에 해당하는 부분 발췌) 자격요건

구 분	직급	임 용 자 격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임용	-급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위 법령상 규정된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자격 기준 중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중복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경력을 자격요건에 포함하여 특정인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2021. 6. 2. (----)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자격요건이 아닌 아래 [표 2]와 같이 자격증 소지자 및 ---- 업무 5년 경력자로서 상기 [표 1]의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의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2개의 자격요건을 혼용하여 공고하였다.

[표 2] 2021년 제4회 일반임기제 -급(----분야) 자격요건

임용 분야	임용 자격기준	비고
---- [일반임기제] (-급 상당)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 업무 5년 근무자 중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 업무 3년 이상 근무자	

그 결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채용공고문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임기제 공무원 임용

2021. 6. 4. 김천시에서 공고한 2021년 제4회 김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김천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2호)에 따르면 ----(일반임기제 -급) 임용자격기준의 경우 위 [표 2]와 같이 되어 있고, 응시원서는 2021. 6. 15. ~ 6. 17.(3일간) 접수하며 경력 등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2021. 6. 18. 당시 응시자 ---, ---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자 2명 모두 서류심사를 합격하였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2021. 6. 25. 시행한다는 내용의 ‘2021년 제4회 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일정’을 공고(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5호)한 후, 2021. 6. 21. 2021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1차 서류전형 시행 공문(2021. 6. 21., 인위-44)을 작성하여 ----분야 응시자 2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서류전형심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김천시 ㅁㅁㅁㅁㅁ과에서는 경력 등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일인 면접시험 예정일 2021. 6. 25.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되 채용공고문 상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산업기능사 또는 --- ----업무 5년 근무자의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채용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김천시 ㅁㅁㅁㅁㅁ과에서는 2021. 6. 15. ~ 2021. 6. 17.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분야에 응시한 응시자 ---, --- 2명 중 ---의 경우 자격요건인 --산업기능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면접시험일인 2021. 6. 25. 기준 --- ---- 업무경력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2021. 6. 18. 응시자 2명 모두 서류심사에 합격하였다고 미리 홈페이지 공개한 후 2021. 6. 21. 형식적인 서류전형절차를 통해 서류상 합격처리 하였다.

[표 3] 2021년 제4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급(----분야) 응시자 및 합격 현황

연번	응시자	제1차 서류전형 (면접일 기준 2021. 6. 25)			2차 면접	최종 합격
		① --산업기능사 또는 ② --- ----업무 5년 근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결과		
1	---	- - 산업기능사 (3년 4개월 27일) (6년 11개월 30일)	충족	서류심사 통과	불참	불합격
2	---	- - 기능사 · 김천시청 ----(--- --) (4년 11개월 24일)	미충족	서류심사 통과	면접 합격	합격

그리고 2021. 6. 25. 면접시험일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가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고 2021. 7. 1. 일반임기제(-급)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심사전형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응시자가 면접시험 후 최종적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급 결원충원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目目目目目과
 내 용

김천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조속히 충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년퇴직 등으로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하고 당시 직근하위직급에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임의로 결원을 산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승진요인을 책정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6. 30. 예정된 -----급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당시 직근하위직급인 -----급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3명이 등재 되어

있었음에도 타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사유로 임의로 결원 1명을 책정하지 않고 -급 승진 대상직렬에서도 ---- 직렬을 제외하여 2020. 6. 23. 2020년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안)를 작성하고 2020. 6. 24. 2020년 하반기 정기 승진관련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에서 -----급이 제외되도록 하였다.

[표] -----급 결원산정 및 승진요인 책정 현황

구분 (인사위원회)	결원인원 산 정	실제결원 발 생 일	승진 요인	승진임용 (명)	승진후보자 (보건진료 7급)	비 고 (인사위원회 심의)
'20. 6. 24.	0	'20. 6. 30. ---- (-----급) 정년퇴직	0	0	3명 ①---, ②---, ③---	인사위원회 미상정
'20. 12. 22.	0		0	0	3명 ①---, ②---, ③---	"
'21. 6. 30.	0		0	0	3명 ①---, ②---, ③---	"
'21. 12. 23.	1		1	1 (①---)	3명 ①---, ②---, ③---	인사위원회 의결 (명부순서대로 결정)

그리고 상기 [표]와 같이 2020. 12. 22.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2021. 6. 30.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때 까지 계속적으로 -----급 결원 1명에 대한 충원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승진요인 또한 책정하지 않고 있다가 특정인이 승진후보자 명부 1위가 되는 시점인 2021. 12. 23.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때 1년 6개월 전인 2020. 6. 30. 발생한 -----급 1명에 대한 결원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급 ---가 승진의결(인사위원회 회의록 : 명부순서대로 승진의결자 결정)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결원 발생시점 인사위원회 의결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서대로 승진 의결자가 결정되었다면 승진할 수 있었던 ---, ---이 손해를 보았으며, 특정시기 승진요인 책정으로 이란회는 특혜를 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급 승진요인 책정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㉔㉔㉔㉔과
내 용

김천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2015. 5. 7. 체결한 김천시↔----- 업무협약에 따라 2016. 8월 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표 1] ----- 파견 현황

연번	파견기간	파견기관	파견자		비고
			직급	성명	
1	2016. 8. 1. ~ 2017. 7. 1.	-----	---급	---	비별도 정원
2	2018. 1. 1. ~ 2019. 1. 1.	"	---급	---	"
3	2019. 1. 1. ~ 2019. 7. 1.	"	---급	---	"
4	2020. 7. 1. ~ 2021. 7. 1.	"	---급	---	"
5	2021. 7. 6. ~ 2022. 1. 1.	"	---급	---	"

따라서 김천시 ㉔㉔㉔㉔과에서는 국내연구기관 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5년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하려는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미리 경북도로부터 결원에 대한 보충 승인을 받고 충원해야 하며 만약 경북도로부터 결원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급 직원을 파견기관에 파견발령 후 해당 직위에 대한 공석을 이유로 직무대리 등을 지정 하는 등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김천시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016. 7월부터 파견발령하고 있는 -----와의 파견기간이 2021. 7월부터는 임용령에서 정한 5년이 초과 되는 시점 이었고 ----- -급 파견인력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별도 정원 사전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2021. 4. 9. 2021년 수시인사시행에 따른 -급 승진요인을 책정하면서 ‘----- 파견 1 (파견협의 중)’ 이라는 항목으로 -급 승진요인 1명을 포함 총 7명에 대한 승진 심의안을 인사위원회 상정하여 승진의결 받도록 하였다.

[표 2] 2021. 4. 9. 상반기 수시인사 현황

연번	승진가능 직렬	승진요인		인사위원회 심의 (2021. 4. 9)	비 고 (의결자)
		인원	요인		
	합계(4개 직렬)		7명	7명 승진의결	
1	--- (-->급)	4명	◦공로연수 + 4명 ◦----- 파견 + 1명 ◦직렬조정 - 1명 (-->-----)	-- 5급 4명 승진의결	--- --- ---
2	----- (-->급)	1명	◦직렬조정 + 1명 (-->-----)	----- 5급 1명 승진의결	---
3	--- (-->급)	1명	◦공로연수 + 1명	-- 5급 1명 승진의결	---
4	--- (-->급)	1명	◦ 명예퇴직 + 1명	-- 5급 1명 승진의결	---

그리고 2021. 6. 14 -----로부터 -급 1명에 대한 공무원 파견 요청(-----과 -5594)이 들어오자 [표 2]와 같이 2021. 4. 9. 승진임용 사전의결된 --직렬 4명 중에 1명인 -6급 ---를 2021. 7. 5. -----에서 근무(2021. 7. 6. ~ 2022. 7. 5.) 하도록 파견발령(㉔㉔㉔㉔과-1747)한 후, 2022. 1. 1. ---급 ---를 다시 -----로부터 조기 파견복귀 시키고 -- -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그 결과 더 이상 파견발령 할 수 없는 기관인 -----로 -- 6급이 파견발령 되어 직무대리 사유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북도로부터 별도정원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임의로 파견협의 등의 사유로 책정된 -- -급 승진요인으로 인해 -- -급 1명이 추가로 승진의결자에 포함되어 추후 -급 승진임용 되었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급) 근무기간 연장 및 정원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감사일 현재까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및 제21조의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김천시에 두는 -----급의 정원은 최대 2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정원에 결원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했어야만 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0000과
내 용

그런데도 김천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 14. 임용된 일반임기제 ---(---- -급, 근무기간 : 2021. 1. 14. ~ 2023. 1. 13.)의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동일 직렬인 ---- -급 ---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1. 2. 15. ~ 2023. 1. 3.까지로 되어있고 ---의 소속기관인 -----로부터 ---의 복직신청서를 2022. 12. 6 접수하여 일반임기제로 임용된 ---- -급 ---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정원이 초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022. 12. 20. 인사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심의건을 상정하여 ---- -급 ---의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 -급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임기제 공무원(---) 연장 근무기간 (근무기간 연장 인사위원회)	---- -급 정원 및 현원 현황				비 고 (--- 복직신청서 접수일)
	정원	현원	임기제 포함	비고	
2023. 1. 14. ~ 2026. 1. 13. (인사위원회 : 2022. 12. 20.)	2	3	포함	정원초과 +1	--- 2023. 1. 3. 휴직 복직 (복직신청서 접수 : 2022. 12. 6.)

그 결과 정원초과로 연장될 수 없었던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연장 되었으며 이로 인해 ---- -급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 정원초과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김천시 0000과에서는 김천시 ----- ---- -- 용역을 아래 [표 1]과 같이 ----과 2021. 1. 6.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김천시 ----- ---- -- 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비고
2020. 12. 18.	2021. 1. 6.	599,303	----	2021. 1. 7. ~ 2022. 12.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59호, 2020. 11. 30.) 제7조, [별표 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¹⁾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용역은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ⅢⅢ과에서는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에 대해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해야

1)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2019. 1. 1.)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6.3억 원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적격심사대상자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다.

한편 위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공고문(김천시 공고 제-----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으로 김천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 정하고 있어 관련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 부여가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김천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²⁾가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의 추정가격(619,881천 원)이 고시금액(6.3억 원) 미만으로 인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³⁾에 대해 부적정한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 20점을 부여하여 총점 95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에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김천시 ⅢⅢ과에서는 아래 [표 2]과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1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1. 1. 6.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김천 소재)

3)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사업자등록일은 2017. 1. 1.

[표 2]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95	91	
김천시 ----- ----- 용역	-----	599,303	2021. 1. 6.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21	21 ⁴⁾	21	적격 통과 점수 (95점)
					경영상태	20	20	16 ⁵⁾	
					신인도	+5~-5	0	0	
					계	41	41	3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	5	5		
				지역업체참여도	4	4	4 ⁶⁾		
				입찰가격	50	45	45 ⁷⁾		
				결격사유	재무위험	-20	-	-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이행실적 심사평점(21점)

비율: $\frac{\text{이행실적}(867,949.083)}{\text{용역규모}(681,869.820)} \times 100 = 127.29\%$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율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0%이상
점수	21.0	19.0	17.0	15.0	13.0

5) 입찰공고일(2020. 12. 18.)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인 -----에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CCC+ 이하(최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16점

6) 지역업체 참여도 40% 이상으로 4점으로 평가

7) 입찰가격(89.370%,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 45점)

$$45 = 5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599,303.520)}{\text{예정가격}(670,596.875)} \right) \times 10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김천시 // // //과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 [표 1]과 같이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또한 같은 행정처분 기준의 비고 6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해야 함에도 제일병원의 경우 SS등급(부유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0퍼센트를 초과한 960퍼센트임에도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하지 않고 “1차 개선명령”으로 처분하였고, ----(주)의 경우 SS등급(부유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인 444퍼센트임에도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2차 개선명령”의 처분을 하지 않고 “1차 개선명령”으로 처분하여 관련 법에서 규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업체명 (점검일자)	위반 사항	초과내역				행정처분		비고
		수질오염 물질등급	기준 (mg/L)	결과 (mg/L)	허용기준 초과율(%)	정당처분	실제처분	
---- (2020.11.16.)	배출허용 기준초과	SS	120이하	1,272	960	조업정지 5일	1차 개선명령	초과율 600% 이상
----(주) (2021.05.13.)	배출허용 기준초과	SS	120이하	653.8	444	2차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초과율 200% 이상 600% 미만

※ 김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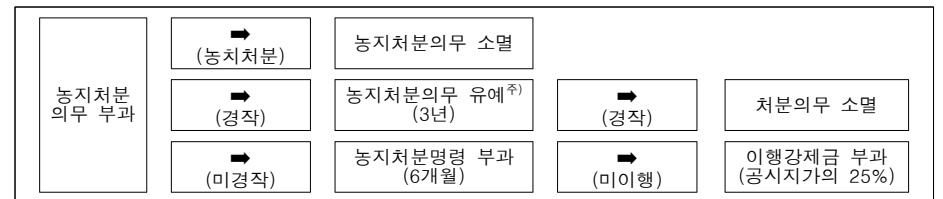
제 목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이하 “농지처분의무”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처분의무 기간(1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처분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 농지처분의무 부과 이후 업무흐름도



주) 처분의무를 유예받은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하여야 함

그리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 식품부 예규)」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8) 복합민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하는 것을 의미
 9) IV.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하여 처분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 VI.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처분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등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0. 4. 3. --- 1791-2(4,828㎡) 휴경에 대하여 ---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한 후 처분의무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처분명령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21. 7. 16. 처분의무가 부과된 같은 농지에 건설자재 야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위해 의제된 농지전용협의 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부적정하게 허가하였다.

[표 2] 농지처분의무(농지처분명령 포함) 부과 된 농지전용 현황

대상농지	지목	면적 (㎡)	소유주	농지처분 의무부과* (사유)	농지처분명령 또는 의무유예	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 허가
						일자	신청인	목적	
김천시 --- 1791-2	과수	4,828	---	2020.4.3. ~2021.4.3 (휴경)	미이행	2021. 7. 16.	(주)--- 종합건설 ---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2021. 7. 23.

* 처분의무 확정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됨

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여야 할 농지가 부적정하게 건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단독주택 건축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¹⁰⁾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용제한면적 1,000㎡를 초과한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겹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¹¹⁾ 연결하여 전용한 농지를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¹¹⁾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하는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10) 「농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0,000㎡ 미만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11) 농지전용허가일 경우는 전용목적 사업 완료일, 변경허가일 경우에는 변경허가 목적 완료일,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농지가 전용된 면적을 합산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는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 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〇〇〇〇과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민원인이 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전용하려는 면적이 제한면적(1,000㎡)을 초과할 경우 농지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2인 이상의 농지전용 신청면적 합이 제한 면적(1,000㎡)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9. 2. 25. --- --- 623 등 3필지에 동일인 ‘---’가 연접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전용제한면적 1,000㎡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2,188㎡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전용 가능으로 협의하였으며, 2020. 3. 17. --- --- 548에 ‘---’가 보전관리지역의 전용제한면적 1,000㎡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1,015㎡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부적정 하게 전용 가능으로 협의¹²⁾하였다.

[표 3]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명세

(단위 : ㎡)

소재지	지번	필지면적	전용면적	농지구분	협의일자	신청인	비 고
---	623	751	751	생산관리	2019.2.25.	---	동일인
	623-3	693	693				
	623-4	744	744				
소계			2,188	-	-	-	
부적정 내용 : 연접 필지를 합한 전용면적이 제한면적(1,000㎡)을 초과							
---	548	1,015	1,015	보전관리 계획관리(330㎡이하)	2020.3.17.	---	보전관리지역
소계			1,015	-	-	-	
부적정 내용 : 보전관리지역의 전용면적이 제한면적(1,000㎡)을 초과							

그 결과 전용제한면적(1,000㎡)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농지가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2) --면 --리 548번지는 2개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 이하이므로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제한면적을 적용하여야 하고, 1,000㎡를 초과한 농지전용은 불가함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00000과
내 용

김천시 00000과에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의거 농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기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에 장비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시장 등은 농업회사법인이 위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2020년 농지업무편람」¹³⁾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제3자에게 주택부지 등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농지 소유를 허용한 취지 및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천시 00000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 4. 농업회사법인(주)-----이 ----- 107 등 7필지(6,258㎡)를 -----에게 사용승낙¹⁴⁾하고 2023. 6. 19. 해당 농지 중 4,857㎡의 농지를 전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주)-----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 신청한 농지전용은 불허하여야 했다.

[표]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의 전용협의 부적정 내역

(단위 : ㎡)

농지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농지전용 면적	전용허가일	전용목적	소유자	수허가자
	계	6,258	4,857				
	107	전	1,184	582	'23.6.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농업회사법인 (주)----- -----
	108	답	982	183			
--	109	답	734	734			
---	110	답	1,114	1,114			
	111	답	971	971			
	111-1	답	335	335			
	115	답	938	938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이 건 토지사용승낙서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¹⁵⁾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부지¹⁶⁾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4) 농업회사법인(주)-----은 2023. 3. ~ 2023. 4.에 걸쳐 -- -- 108, 109, 110, 111, 111-1, 115 농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후 -----에게 202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승낙하였음

15) 00000과-13064(2023. 6. 19.)호

16) 김천시 00000과-13064(2023. 6. 19.)호는 농지전용 협의 등을 거쳐 2023. 6. 22.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하였고 해당 농지는 황토벽돌, 타일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건축 부지로 사용

13)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전용목적 취득 관련 질의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ㄱㄱㄱㄱ과
내 용

김천시 ㄱㄱㄱㄱ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방지 조치나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비 예치,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복구 대집행 등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이하 복구의 무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한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17)를,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18)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19)를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17)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토석채취허가·신고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면제)
18)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제42조(복구준공검사)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천시 ㄱㄱㄱㄱ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복구의무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하고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불법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복구비의 예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구의무자로부터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 복구하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 복구비 예치,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ㄱㄱㄱㄱ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김천시 -- -- 산12 외 1필지 등 34건의 불법산지전용지를 복구하면서 복구명령 미실시(23건), 복구설계서 미제출(7건), 복구비 미예치(34건), 준공검사 미실시(16건),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31건)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절차 부적정 내역

연번	불법산지전용 내역				조치사항						비고
	불법전용지	피해 발생일 (사건번호)	피해면적 (㎡)	행위자	복구명령 여부	복구설계서 제출여부	복구비 예치여부	복구 여부	준공검사 여부	하자보증금 예치여부	
1	산12외1	2018.4.경 (2020-28)	830	***	부	여	부	여	여	부	
2	산58외1	2020.2.경 (2020-31)	780	***	부	여	부	여	여	여	
3	산87	2020.5.경 (2020-36)	950	***	부	여	부	여	여	부	
4	산33외1	2021.1.14. (2021-04)	4,510	***	부	여	부	여	여	여	
5	산52	2019.12.경 (2021-05)	4,698	***	부	여	부	여	여	부	
6	산114	2021.2.경 (2021-10)	1,060	***	부	부	부	여	여	부	
7	산64-9외1	2020.4.경 (2021-12)	786	***	부	부	부	여	부	부	
8	855임	2021.4.26. (2021-14)	1,404	***	부	부	부	여	부	부	
9	산8-3외1	2020.12.31. (2021-17)	16,780	***	부	여	부	여	여	부	

20) 복구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은 경우 면제

연번	불법산지전용 내역				조치사항						비고
	불법전용지	피해 발생일 (사건번호)	피해면적 (㎡)	행위자	복구명령 여부	복구설계서 제출여부	복구비 예치여부	복구 여부	준공검사 여부	하자보증금 예치여부	
10	산69-1	2020.12.경 (2021-19)	679	***	부	부	부	여	부	부	
11	산127-1	2021.2.경 (2021-21)	2,852	***	부	여	부	여	여	부	
12	산289-3외1	2021.7.20. (2021-22)	912	***	부	부	부	여	부	부	
13	산40	2017.9.경 (2021-26)	1,013	***	부	부	부	여	부	부	
14	산56-1	2020.8.경 (2021-28)	1,886	***	부	여	부	여	여	부	
15	산12-1 외 2	2020.5.경 (2021-29)	4,360	***	여	여	부	여	여	부	
16	산28-1	2020.12.1. (2021-30)	898	***	부	여	부	여	여	부	
17	산63	2021.11.1. (2022-2)	1,700	***	부	여	부	여	여	부	
18	산13 외 2	2021.9.23. (2022-7)	747	***	부	부	부	여	부	부	
19	산39-4 외 2	2022.2.경 (2022-6)	2,709	***	부	여	부	여	여	부	
20	산54-3	2021.3.26. (2022-4)	18,434	***	부	여	부	여	여	부	
21	산11-1	2020.5.경 (2021-3)	4,360	***	여	여	부	여	여	여	
22	산1-1	2022.1.11. (2022-23)	709	***	부	여	부	여	여	부	
23	산105	2021.9.경 (2022-22)	1,630	***	여	여	부	여	부	부	
24	산154	2020.4.경 (2022-27)	815	***	부	여	부	여	여	부	
25	산69 외 3	2022.1.경 (2023-1)	19,739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26	산11-3	2021.10.경 (2023-2)	720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27	산5-1	2022.11.경 (2023-8)	7,728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28	산16-2	2023.6.경 (2023-17)	20,528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29	산11-18 외 4	2023.2.경 (2023-18)	20,700	***	부	여	부	여	여	부	
30	산29-1	2022.12.경 (2023-19)	11,140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31	산63-6	2022.4.경 (2023-20)	1,650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32	산61	2023.3.경 (2023-21)	1,260	***	여	여	부	여	부	부	
33	산64 외 1	2022.11.경 (2023-22)	1,465	***	부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34	산104 외 1	2023.5.경 (2023-24)	735	***	여	여	부	부	부	부	복구중

※ 김천시 제출자료 재구성(복구의무 면제지 제외 : 김천시 -- -- 산119 외 6건)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김천시 --- 산123-1 외 1필지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불법산지전용지 2개소(3,114㎡)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지복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표 2] 불법산지전용지 미복구 내역

연번	불법산지전용 내역				조치사항		비고
	피해 소재지	피해 발생일 (사건번호)	피해면적 (㎡)	행위자	복구명령여부	복구여부	
1	--- 산123-1 외 1	2022.2.18. (2022-11)	791	***	부	부	개인묘지
2	--- --- 산51-1	2022.3.20. (2022-18)	2,323	***	부	부	과수원

[그림]

그 결과 불법으로 훼손된 34건의 산림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불법산지전용지 2건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 --- 산51-1 등 미복구된 복구대상지 2개소(3,114㎡)에 대하여는 복구명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복구하시기 바라며, -- --- 산69 등 복구가 진행중인 복구 대상지에 대하여는 복구비 예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제 목 석유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감경 부적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 2회 위반은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 2회 위반은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1)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1백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횡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을 1/2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차량 연료로 등유 주유(판매)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 10. 13.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적발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등유를 주유(판매)한 -----에 사업정지 7개월(이동판매 2회, 유통질서 훼손 1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업체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1/2을 감경한 3.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 5. 12.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적발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에는 사업정지 3개월(유통질서 훼손 2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감경사유를 근거로 하여 1/2을 감경한 1.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의 경우 사업정지 3.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25,757,48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과징금의 위반정도, 위반횟수를 이유로 다시 1/2을 감경한 12,878,740원을 부과하였으며, -----의 경우 사업정지 1.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11,157,18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1/2을 감경한 5,578,590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 현황

업체명	위반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위반횟수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사업정지(1/2감경)	과징금(1/2감경)		
-----	'20.10.13.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차량 연료로 등유 83.94리터를 주유(판매)	사업정지 7개월 (과징금 38,000천 원)	사업정지 3.5개월 (과징금 25,757,480원)	과징금 12,878,740원	제39조 제1항 제8호(2회), 제10호(1회)	행정처분, 과징금 1/2감경 (사소한 부주의)
-----	'20.05.12.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 39리터를 판매	사업정지 3개월 (과징금 8,000천 원)	사업정지 1.5개월 (과징금 11,157,180원)	과징금 5,578,590원	제39조 제1항 제10호(2회)	행정처분, 과징금 1/2감경 (사소한 부주의, 경미)

2.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고발 미조치 부적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거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등유를 주유(판매)한 행위 또는 자동차용휘발유 주유기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 미달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에서 규정된 고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 10. 13.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적발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등유를 주유(판매)한 -----와 '22. 1. 13.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적발된 자동차용휘발유 주유기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 미달로 판매한 -----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표 2]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관련 고발 등 미조치 현황

업체명	위반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	'20.10.13.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등유 83.94리터를 주유(판매)	고발조치	고발 미조치	
-----	'22.01.13.	자동차용휘발유 주유기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미달(1차 : -170mL, 2차 : -160mL)판매	고발조치	고발 미조치	

그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처분감경과 고발 미조치 등의 특혜를 주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김천시 ▶▶▶▶과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공업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외 공업 수요를 지역 내로 유입하고자 “-----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3. 11. 16.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아래 [표 2]와 같이 하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²²⁾를 진행하였다.

[표 1] 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사업내용	계약일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사	비고
-----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산업단지조성 1,231,550㎡	'22.6.13.	27	'22.6.14. ~ '24.2.3.	(주)----- (주)----- (주)-----	

[표 2]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단위 : 억 원)

22) 평가기준 확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5개 업체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2023. 11.30.) → 평가결과 공개(2023. 12. 5.) → 공법선정자 통지

구분	공법제원	직접공사비	공고일자	공고번호	비고
옹 벽	H=1.0~30.0m L=1,031m A=17,791㎡	93.2	'23. 11. 16.	김천시 공고 제-----호	
비점오염 저감시설	총용량 q=2,340㎡/h 4개소	17.5	'23. 11. 16.	김천시 공고 제-----호	
빗물저류조	V=400㎡	1.9	'23. 11. 16.	김천시 공고 제-----호	
암발파	대규모발파 V=97,190㎡ 중규모진동제어발파 V=29,436㎡ 소규모진동제어발파 V=4,577㎡	16.1	'23. 11. 16.	김천시 공고 제-----호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대상 검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²³⁾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의 제1장 공법선정 절차²⁴⁾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설계에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단축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23)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12절(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제1관(통칙)
24) 제1장-제12절-제2관(공법선정 절차)-1(외부전문가자문)

경우에만 반영하여야 하고, 타 공법(일반공법) 적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타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반공법 적용이 가능함에도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특정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일반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사비 평가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안서 평가²⁵⁾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별표]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정량적(객관적) 평가분야 중 공사비 평가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공사비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 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10.0
		B. 90% 이상 95% 미만	9.0
		C. 95% 이상 100% 미만	8.0
		D. 100% 이상 105% 미만	7.0
		E. 105% 이상	6.0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5) 제1장-제12절-제2관-6(제안서 평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 [표 3]과 같이 공사비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암발과공법 외 3건)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4]와 같이 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으로 평균공사비²⁶⁾보다 저렴하게 공사비를 제안한 제안참여자²⁷⁾보다 평균공사비를 제안한 제안참여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확정·공고하여 제안참여자로부터 공법 제안서²⁸⁾를 접수하였다.

[표 4] 공사비 평가(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85% 미만	85%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100% 이하	100% 초과 ~105% 이하	105% 초과 ~115% 이하	115% 초과
	A	B	C	D	E	F	G
점 수	4	6	8	10	8	6	4

그 결과 제안참여자가 예산을 절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면 오히려 공사비 평가 시 불이익(최고 6점 감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해 사업의 정량평가 결과 깎기부용벽, 비점오염시설, 암발과의 경우 평균공사비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안한 제안참여자가 정량평가에서 탈락하게 되어 정성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26) 평균공사비: 업체로부터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비
 27) 제안참여자: 해당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28) 공법 제안서: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소하천 정비공사	--	--	하천정비 L=5.7km 교량개체 4개소	4,743,727	'17. 12. 5.	'17. 12. 11. ~ '23. 8. 23. (시공중지) '23. 6. 14.	-----㈜ ---	

1. 소하천 하도선형 및 하천시설 변경 부적정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리청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²⁹⁾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르면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29)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안전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④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소하천(소하천시설 포함)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소하천 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최대한 자연형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치수, 이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의 선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소하천의 하도 변경이나 하천시설을 추가 설치 할 경우 계획홍수위 상승에 따른 계획제방고 및 소하천구역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 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등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김천시 ■■■■■과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소하천 하도의 선형 및 비탈경사(1:2.0→1:0.3) 등을 변경하고 돌보 7개소(A=616㎡)와 여울 5개소(A=732㎡) 등을 추가 설치하면서 치수 안전성이나 관련 계획 검토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홍수위 상승에 따른 제방 또는 교량 여유고 부족 등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장기계속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등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ⅢⅢⅢ과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ⅢⅢⅢ과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따르지 않은 채 아래 [표 2]과 같이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표 2] 부적정한 차수별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사업기간	변경계약일자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변경내용	비고
--소하천 정비공사 (3차 1회)	2019. 3. 18.~ 2020. 3. 10.	2020. 3. 10.	512,480	535,812	흙막이 가시설 등 추가	
--소하천 정비공사 (4차 2회)	2020. 4. 27.~ 2021. 4. 26.	2021. 4. 20.	650,100	650,100	여울공, 자재 소운반 등 추가	
--소하천 정비공사 (5차 1회)	2021. 5. 13.~ 2022. 5. 23.	2022. 4. 21.	777,400	1,077,400	옹벽, 가시설 등 추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³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³¹⁾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ⅢⅢⅢ과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 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ⅢⅢⅢ과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띠, 위험테이프, PE헬스, 안전헬스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총 59건의 28,012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정,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용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합계금액의 2.93%~1.38%까지 적용함.

31)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기간	안전보건관리비 계약금액	목적 외 청구금액	건수	비고
5건		64,362	28,012	59건	
--소하천 정비공사(1차)	2017. 12. 5. ~2018. 11. 11.	15,861	2,539	11건	
--소하천 정비공사(2차)	2018. 4. 6. ~2019. 6. 6.	4,627	3,648	13건	
--소하천 정비공사(3차)	2019. 3. 18. ~2020. 3. 10.	13,293	6,984	14건	
--소하천 정비공사(4차)	2020. 4. 27. ~2021. 4. 26.	8,538	3,348	5건	
--소하천 정비공사(5차)	2021. 5. 24. ~2022. 5. 23.	22,043	11,493	16건	

4.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종은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가. 설계변경 부적정(과다계상)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3절 소하천 호안에 따르면 제방호안의 비탈덧기³²⁾ 높이는 계획홍수위까지 하고 제방의 중요도, 하도특성, 파랑, 만곡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앞비탈 머리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No.121 ~ No.136 (좌안) L=300m, (우안) L=200m의 비탈덧기(호안공) 높이는 당초 설계에 계획홍수위까지 계획하였으나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른 검토없이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비탈덧기 높이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62,742천 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부적정하게 시공하였다.

[그림]

나.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부적정

가시설(흙막이 토류판) 및 공사용 가도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시설 H파일(174본→169본) 5본, 공사용 가도 마대쌓기(3,623EA→120EA) 3,503EA, 흙관(D1000 128m→72.5m) L=55.5m 노치³³⁾(알루미늄→면목)에 대하여 공사비 25,88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2) 유수, 유목등에 대해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33) 교각 및 교대의 빗물을 지면으로 유도낙수 시키는 장치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해당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치수안전성을 검토 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28,012천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25,881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과
내 용

김천시 〇〇〇〇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진입도로 개설공사	-	--	도로개설 L=0.25km 교량개체 1개소	5,483,578	'21. 6. 1.	'21. 6. 11. ~ '24. 1. 15.	----(주) ---	

1. 하도급관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에 따라 건설업자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항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하도급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김천시 ○○○○과에서는 2021. 8. 17. 시공사로부터 변경 하도급관리 계획서 승인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도급관리계획(변경)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실제 하도급 계약과 상이하여 하도급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도급액	원도급자	하도급계획				실제 하도급			
			공종	금액	하도급액	하도급업체	공종	금액	하도급액	하도급업체
진입도로 개설공사	5,483,000	----(주)	토목 · 철근 콘크리트	2,061,400	1,706,100	(주)----	토공, 구조물	2,238,791	1,864,497 (83%)	(주)----
							강교제작 및 설치	1,061,279	878,023 (83%)	(주)----
							강관파일 설치	392,480	366,630 (93%)	(주)---- --

2.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0조(현지 여건조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조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 제134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에 공사감독자는 지방서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또는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암파쇄 방호시설은 절취 및 암파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석, 암괴의 도로유입을 차단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구조물로서 기존도로 정비 또는 확장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깎기부 중 계획절토고 및 기존 사면 경사에 따라 설치 높이를 제시하고 있고 사면 소단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매개변수 입력을 통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상기 공사는 암파쇄 방호시설 L=76.0m(h=4.0m)로 계획하여 시공하였으나 STA.0+60 구간 L=36.0m(h=4.0m)는 기존 사면의 횡단면도가 없는 등 설계도서가 불분명함에도 적정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공종 시공 전 시공계획서 제출 및 검토·확인하여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하여 감사기간 중 중단면도의 등고선 등으로 기존 사면의 횡단면을 추정하여 재검토한 결과 사면경사는 1:1.2 이상(1:1.5)으로 암파쇄 방호시설의 설치 높이는 3m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를 높이를 4m로 시공하여 적정 3m 대비 공사비 19,195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당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3. 설계변경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종은 설계 변경을 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상기 공사는 교량 기초공사 시공 시 차수를 위한 가시설(시트파일) 공종을 설계 변경으로 추가하면서 말뚝박기 천공을 동반한 시트파일 향타는 침전물 구간 1m만 반영하여 시공 가능함에도 천공과 향타 모두 시트파일 1본당 5.0m 길이로 반영하여 23,100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주) ---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23,1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계획(변경) 및 설계용역	김천	--	공원조성 A=296,564㎡	862	'19. 9. 4.	'19.9.5. ~ '21.12.19.	(용역사) (주)----- 외 2 ---	
-- ---- 조성사업	김천	--	공원조성 A=296,564㎡	6,178	'22. 9. 20.	'22.9.30. ~ '24.5.24.	(시공사) ----(주) --- (건설사업관리자) (주)----- 외 1 --- 외 1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부적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 부문 용역비를 산출하는 효율 및 공사비가 효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 보간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효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 분야의 효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실시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50억 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100억 원 이하	4.15	3.43	5.01	5.41	3.47

그런데도 김천시 ㉠㉡㉢㉣과에서는 -- -----계획(변경)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로 적용(도로)하면서 공사비(90억 원)에 따른 직선 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정 시 4.24%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산식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4.71%로 적용 후 용역비(66,460천 원)를 과다 계상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암발파 공법 변경 및 실정보고 승인 부적정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2006. 12.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암발파 공법은 지발당 장약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6가지 Type³⁴⁾으로 표준화하고, 보안 물건의 허용진동기준과 이격거리에 따라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건표」를 기준으로 설계자가 쉽게 적정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발파 공사 시행 전에는 반드시 시험 발파를 통하여 발파 진동 추정식을 구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및 보안 물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시공회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발파 착수 전 발파 영향권 내 보안 물건에 대해 건물 현황과 균열 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시험 발파, 본 발파,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6조(시험 발파)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 발파계획서를 사전에

34) Type1(미진동굴착공법), Type2(정밀진동제어발파) Type3~4(소규모, 중규모제어발파) Type5(일반발파), Type6(대규모발파)

제출받아 관계 규정 저촉 여부, 안전성 확보 여부,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험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을 검토한 후 시공성과 경제성 및 보안 물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보안 물건(배수지, 초등학교, 빌라 등)을 지정하면서 시험 발파 및 발파영향권 검토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반이 암반층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반발파공법에서 암 파쇄(암 깨기+천공)공법으로 변경된 실정 보고에 대해 현장여건 확인 및 암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암 파쇄 공법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절토 구간의 실 현장 여건은 현재까지 작업 구간 기준으로 암반층이 아닌 토사층으로 확인이 됨에 따라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사가 불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실정 보고 및 사업비 361,493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3. 동상방지층 설치 검토 소홀

도로의 포장은 도로의 교통 하중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설계에 의한 포장층(표층, 기층, 보조기층 등)과 동결기 동결심도에 의해 노상층이 동결되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상방지층으로 구성된다.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 8.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동상방지층 설치는 동결깊이, 흙 쌓기 높이, 지하수위, 노상토의 특성 순으로 검토하고 각 단계별 성토 높이 2m 이상, 동상 수위 높이차 1.5m 이상, 노상토가 암반인 구간, 노상토의 0.08mm 통과율이 8% 이하이면 동상방지층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내부 도로는 흠쌓기 높이가 노상 최종면을 기준으로 2m 이상인 흠쌓기 구간으로 품질시험 결과 노상토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며, 지하수위가 낮아 노상으로의 수분공급이 억제된 경우로 동상방지층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동상방지층이 불필요한 조건에 해당이 되며 현장 발생 유용토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실시설계 용역 상 반영³⁵⁾되어 있다는 사유로 동상방지층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지시를 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 사업비 14,861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에 반영된 놀이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 검토 및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여 17,063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35)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상 동결깊이 38cm > 포장층 31cm 이므로 동상방지층 깊이 7cm 반영으로 검토 되었음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및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에 반영된 임시 침사지 12개소 중 4개소는 미설치 하였으며, 임시 침사지 설치에 사용된 자재는 설계상 PP 마대에서 톤 마대로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실정보고 등 조치 없이 12,188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설계서 상 반영된 우수공, 구조물공 등에 설치 시 벽체는 유로폼으로 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유로폼으로 변경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감독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³⁶⁾에

따라 관련 공사비 1,595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및 실정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90,137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급수구역 확장공사	---	---	배수·급수관로 (D25~100mm) L=9.2km 가압장 1개소	632	'21.12.22.	'21.12.29. ~ '23.12.28.	----(주) ---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	---	하수관로 L=8.3km, 맨홀 펌프장 7개소	3,343	'21.10.12.	'21.10.18. ~ '24. 6. 2.	(주)---- 외1 --- 외 1	

1.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미반영 지구 사업 시행 부적정

「수도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6)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또한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관로의 배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각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방침 및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며 사업 지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 -- 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전문공사(상·하수도 설비공사) 직접 미시공 및 분리발주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 ---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도급자 (주)----(주)----과 ----(주)은 전문면허(상·하수도설비공사)를 가진 업체로 계약한 공중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도급자는 “-- ---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관로 공사 구간이 중복되어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상호간 협의하여 터파기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업체인 (주)----(주)----에서 시행을 하였고 되메우기는 급수구역 확장공사 업체인 ----(주)에서 시행하는 등 해당 공사로 계약된 토공 및 포장공에 대해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공사에 대해 하자 발생 시 그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김천시 ■■■■과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공사” 설계 시 아래 [그림]과 같이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터파기 폭에서 추가수량을 설계서에 반영하여 발주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상·하수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2021. 10. 18. 착공된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진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이 35,577천 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김천시 ■■■■과에서는 동일 지구에서 같은 업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현장사무실, 품질시험실, 안전관리비 미반영)하는 등 전문공사가 직접 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3. 현장대리인 이탈 등 현장관리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81조 제7호에 따라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 의거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배치된 ----(주) 현장대리인이 2023. 12. 2. 부터 발주부서 승낙 없이 이탈계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감사 종료시 까지도 현장에 배치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건설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4. 하수관로 품질관리 부적정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르면 하수관로 시공의 성능 확인을 위해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고시)」를 준수하여 시공에 필요한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시기에 따라 시공중에 실시하는 시공검사와 시설준공 시 실시하는 준공검사로 구분되며 검수수량은 시공검사의 경우 시공관로 전체, 준공검사의 경우 시공관로의 5%를 기준으로 하고 관로시공 검사 시기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하면서 하수관로의 시공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차수분 시공 또는 준공 시 해당 관로에 대해 관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CCTV 및 수밀시험 조사용역”을 관로공사 착공(2021. 10. 18.) 이후 시점에 발주(2023. 1. 30.)하여 그 이전에 시공된 구간(L= 8.3km 중 6km)에 대해서는 시공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1, 2차분 준공 이후(임시포장 후) 시공검사를 이행하는 등 관로 품질검사에 적정성을 기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5.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37)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공법변경 및 투입 자재를 변경하여도 목적인 품질의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7)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의 변경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관로 구간 터파기 시공 폭이 당초 1.28m ~ 1.92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관로 시공 시 터파기 폭을 1.28m ~ 1.3m(가시설구간) 폭으로 일괄 시공 하였고 변경 사항에 대해 구조 및 안전성 검토없이 추진하는 등 이에 따른 실정 보고 및 사업비 93,860천 원(자재포함)을 감액 조치 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93,86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제31조,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건설기술인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약 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소하천 정비공사	김천시 ---	하천정비 L=1.4km BOX교 2개소 등 ---	2,843	1,784	1,059	'21. 4. 2.	'21. 4. 9.~ '24. 4. 7.	----(주) (---)	40.0%

1. 사업지구 변경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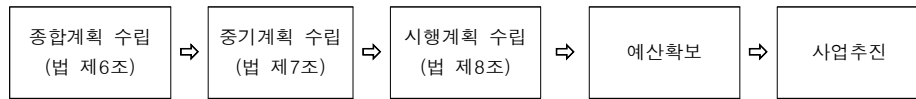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소하천 등 정비³⁸⁾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³⁹⁾(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8)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예정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浚築)·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함
 39) 2017. 12. 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소하천 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기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계획을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소하천 사업추진 절차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관리청으로서 소하천 등 정비를 할 경우 위 [표 2]와 같이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을 변경한 후 변경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2022. 8. 26. 민원을 사유로 --- 1380-1 일원에서 --- --- 1390-22 일원으로 사업구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을 따르지 않고 변경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종합계획 상 하폭 및 여유고를 충족하여 개수가 필요 없는 지역에 호안블록 L=334m를 설치하였고,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목교 L=35.67m를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소하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소하천 불법점용 행정조치 미이행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⁴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하천 내 불법 점용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김천시 --- 1380-1⁴¹⁾ 일원에 지장물 소유자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을 사유로 사업지구를 변경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국유지 내 불법 점용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40)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41) 소유자: 건설부, 면적: 115.275㎡

등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구간 상류 제외지에 불법 시설물이 있음에도 철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등 소하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 1]

3.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전 공사 시행 부적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그 밖에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2021. 4. 9. 착공 이후 토지 일부를 훼손한 상태에서 2022. 9. 19.부터 9. 28.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 부적정 현황

공사명	품질시험계획 승인 여부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품질관리자	비고
--소하천 정비공사	미승인	미구비	미설치	미배치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위 [표 2]와 같이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은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과-7258(2020. 11. 13.)호로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⁴²⁾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6. 공사감독 업무 소홀에 따른 시공 부적정

42)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 부유물질(SS)측정, 침사지 설치, 세륜제차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에서는 감사일 현재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하천 호안 KCS 51 60 10, 국토교통부)에 의거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가 각돌에 충분히 부착되도록 쌓고 접합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막대 등으로 줄눈을 다져 채우고 줄눈 부근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찰쌓기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타르를 꼭 채워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타르가 부적정하게 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2]

7. 공사원가 과다 계상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변친수공간에 필요한 순성토 843m³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유용할 수 있음에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17,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미설치한 세류기 10,000천 원(제경비 포함), 미설치한 규준틀 5,700천 원(제경비 포함), 미설치한 비계 3,1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는 등 총 35,8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소하천 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치수안전성을 검토 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후 「소하천정비법」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시공된 호안 철쭉기 구간에 대해 재시공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35,8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김천시 □□□□과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 조성공사	김천시 ---	데크로드 L=813m	1,774	1,001	773	'21. 6. 28.	'21. 7. 2.~ '22. 8. 24.	(주)----- (---)	100%
----- (-----) 조성사업	김천시 ---	사계절 썰매장 조성 L=128m*6	2,669	2,462	207	'23. 5. 22.	'23. 6. 1.~ '24. 2. 29.	----- (주) (---)	45.0%

1.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 부적정 현황

공사명	품질시험계획 승인 여부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품질관리자	비고
----- (-----) 조성공사	미승인	미구비	미설치	미배치	
----- (-----) 조성사업	승인(부적정43)	미구비	미설치	미배치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 조성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위 [표 2]와 같이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43) 품질시험실, 시험검사장비, 품질관리자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승인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공사에정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㉔㉔㉔과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가 제출되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된 이재선이 현장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대리인 교체 등 시정하지 않았고, 감사기간 중에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실정보고 없이 선시공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어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지침 제14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 및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어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실정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㉔㉔㉔과에서는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청 방침을 득하지 않은 채 2023. 11. 9.⁴⁴⁾ 및 2023. 11. 30.⁴⁵⁾ 내부결재를 통해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관급자재만 추가 구입 후 2023. 12. 2.부터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⁴⁶⁾하도록 하였다.

44) 보강토블록(500×450×200) 276개, 이형철근 19,061톤 등 총 22,680천 원을 구입
45) 식생옹벽블록(1000×750×500) 146개, 파형강관(D400) 18m, 커플링밴드(D400) 2개, 벤치플룸관(2000×300×300) 80개 등 총 12,524천 원을 구입
46) 기시공: 보강토블록, 이형철근, 식생옹벽블록, 미시공: 파형강관, 벤치플룸관

4.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식생옹벽블록 뒷채움에 사용되는 골재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쇄석골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뒷채움 없이 시공하였는데도 재시공 명령을 하지 않는 등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아래 [그림]과 같이 부적정하게 시공하도록 하여, 재시공⁴⁷⁾ 비용 약 17,750천 원이 발생되게 하였다.

[그림]

5. 주요기자재 공급원 미승인 및 시공 확인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47) 식생옹벽블록 재설치 A=82m(뒷채움 미설치 구간) / 감사기간 중 기술사 의견 조희 결과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제131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주요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5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시험성과표가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하며,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데크 동바리에 소요되는 H형강(74.23톤) 등 현장 내 반입되는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데크 동바리(H형강) 시공 시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도록 하지 않는

등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기록 하도록 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기술사용료 미감액 부적정

김천시 ㉠㉡㉢과에서는 (주)----- 대표이사 ---와 2022. 7. 15. “-----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⁴⁸⁾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7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며,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기술보유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낙찰자(수급인)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한다면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설계내역서 상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비에서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급인(----- (주) -----)과 하수급인((주)-----)이 2023. 6. 1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설계내역서 상에 계상된 기술사용료 52,110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48) 특허명: 레인가이드를 구비한 사계절 전천후 썰매장, 특허 제10-2184888호

7. 공사원가 과다 계상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시 ㉠㉡㉢과에서는 “-----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테크로드 동바리 설치에 소요되는 H형강을 친공하여 설계된 물량(74.23톤)만큼 설치하지 않고 풍화암 상단까지만 설치⁴⁹⁾하였음에도 미설치한 H형강 5.96톤, 37,000천 원 (제경비 포함)을 회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적정하게 시공된 식생옹벽블록은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49) 감사기간 중 의심사항에 대해 업체 소명을 통하여 확인함

52,11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부당 지급된 사업비 37,000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장설립제한지역 관련 공장 건축허가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건축허가 부적정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¹⁾을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시 △△△△△과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오염원이 입지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정함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6. 16. 건축주 ---이 --- 504-5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과 관련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건축사유에 의거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2021. 6. 28. 건축허가 처리 및 2022. 2. 25.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제조업소) 건축허가 내역

소재지	용도	면적(m ²)		토지이용규제사항 (관련 법령)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 504-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212.21	196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적정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확인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제한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1. 6. 16.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은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 504-5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여 「수도법」 제7조의2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인 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제조업소)설립이 불가함에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적합하다는 보고 및 관련 건축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에 관련 법에 따라 입지 할 수 없는 공장(제조업소)이 부적절하게 설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주의)
- ②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